

# 공제금 / 중간정산금 / 해약환급금 청구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며, 공제금 외에 이 계약에 관하여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있을 경우 아울러 반환을 청구하오니 아래 「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 수령계좌」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구자	①성명	②서명 또는 날인*	③주민등록번호
	④주소	⑤계약자(수급권자)와의 관계 ⑥휴대전화	

\* 우편 송부시에는 서명 또는 인감날인후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 수령계좌 ※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의 대표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

⑦거래은행	은행	⑨예금주	* 계좌압류여부 (자필기재)
⑧계좌번호			압류중 / 정상
⑩압류방지계좌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* 수령계좌의 압류여부 필히 확인	

\*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수령계좌 통장사본 첨부 \* 공제금/중간정산금의 경우에만 압류방지계좌 사용 가능/여부 체크

○ 계약 관련 기재사항 및 지급관련 확인사항

⑪계약자성명	⑫공제계약번호
⑬청구사유 발생일 20 년 월 일	⑭공제금 지급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지급

- \* 분할지급 선택시 [별지 17-2호] 분할공제금 청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(“사망, 중간정산, 일반해약”시 분할지급 선택불가)
- \* 분할지급 신청시에도 공제금 외의 반환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- \* 공제금(해약환급금) 지급연도의 납부부금 및 중간정산금 지급연도의 지급이전 납부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\* 일반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세 포함) 원천징수되며,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)

⑮ 청구사유 (해당 사유에 √표시 해주십시오)				
구분	공제금	중간정산금	간주해약환급금	일반해약환급금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사업자의 탈퇴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산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령 (만 60세 이상, 부금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자의 청구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연재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재난 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희생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산	<input type="checkbox"/>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,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의해약 -자기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-임의해약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받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 (천재·지변의 발생, 해외이주, 3개월이상 입원치료·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발생, 중앙회의 해산) *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필요 (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8의3서식) <input type="checkbox"/> 12개월 이상의 부금납부미납으로 중앙회에 의한 계약해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자의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계약해지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대표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,부상에 의한 퇴임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연재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재난 <input type="checkbox"/> 질병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희생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산			

\*중간정산 청구 시 공제사유 직전 납부된 1개월(분기납입 경우 1분기)분 부금과 장려금 등을 제외한 공제금 전액을 지급하며, 가입은 계속 유지됩니다.

⑯ 상속인 일부지급 청구비율 (*계약자 사망에 의한 청구서)	(법정상속비율)	%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

※ 이면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금/중간정산금/해약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접수 시 확인사항 (√표시)	담당	부장
<input type="checkbox"/> 청구자 본인 확인		
<input type="checkbox"/> 청구자 신분증 사본		

□ 첨부서류

[공 통]

1. 표면의 「공제금/해약환급금 청구서」
2.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
3. 청구자의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(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)
4.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또는 「사실확인(원)」

※ '퇴직소득' 또는 '기타소득' 계산시 실제 소득 공제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서류 (공제금/환급금 청구 후 5년내 제출시 세금 환급 가능)

[공제사유가 폐업 또는 법인의 해산인 경우]

1. 사업체의 폐업증명서(세무서발급/직인필)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
[공제사유가 사망인 경우]

1. 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일반)·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사망사실 미기재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추가)
- ※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일반)·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☞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할 서류
① 「수급권자 대표신청서」 (인감날인된 것)
② 수급권자 전원의 인감증명서(발급후 3개월 이내의 것)
③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상세 또는 특정)·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
[공제사유가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]

1. 탈퇴계약서나 동업계약철회서(탈퇴 또는 동업계약 철회 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추가) 또는 공동사업자의 탈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“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”

[공제사유가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의 퇴임인 경우]

1. 퇴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병명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)
2.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
[공제사유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]

1.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증

[공제사유가 질병부상인 경우]

1. 6개월 이상 입원치료(요양)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병명 및 6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이 기재된 것)

[공제사유가 희생파산인 경우]

1. 희생개시결정,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예시. 희생개시결정문, 희생인가결정문, 파산선고결정문 등)

[간주해약 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]

1.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
2.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
3. 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

[간주해약 사유가 배우자·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]

1.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
2.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
3.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4.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[간주해약 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]

1.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

[임의해약의 경우]

☞ [공통]란의 서류만 첨부

※ 단, 지자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(30일 이내 발급)

□ 추가서류

※ 청구자의 대리인이 공제금/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

- ① 청구자의 위임장(청구자의 인감 날인)
- ②청구자의 인감증명서(발급후 3개월 이내)
- ③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④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☞ 이 경우 청구서 첨부서류 중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은 생략

※ 「공제금/해약환급금 청구서」를 우편 제출하는 경우 추가 서류

- ①청구자의 인감증명서 (다만, 수령방법은 계좌이체, 수령계좌는 청구자의 예금계좌에 한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☞ 이 경우 「청구서」에는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서명